2025년도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포천시

발간사

포천시는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0월 20일 세 분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위원회 운영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매년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는 일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판단과 권고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부서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 점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위원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위원회가 한층 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찾아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읍·면·동 각종 단체 회의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단순한 민원 처리 창구를 넘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활동을 면밀히 돌아보고,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반복되거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유사한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직접 조사 비율을 높이고, 의결에 따른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5년도 위원회 운영 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6년 3월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일동

목차

Chapter 01 소개와 절차

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 6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 6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 8

02 고충민원의 개념 및 처리절차 | 9

1. 고충민원의 정의 | 9
2. 처리절차 | 9
3. 처리결과 유형 | 10
4.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경과 | 10

Chapter 02 결과

0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결과 | 12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 12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14
3.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결과 | 15

Chapter 03 부록

04 부록 | 38

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8
2.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53

Chapter

01 소개와 절차

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02 고충민원의 개념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정의
2. 처리절차
3. 처리결과 유형
4.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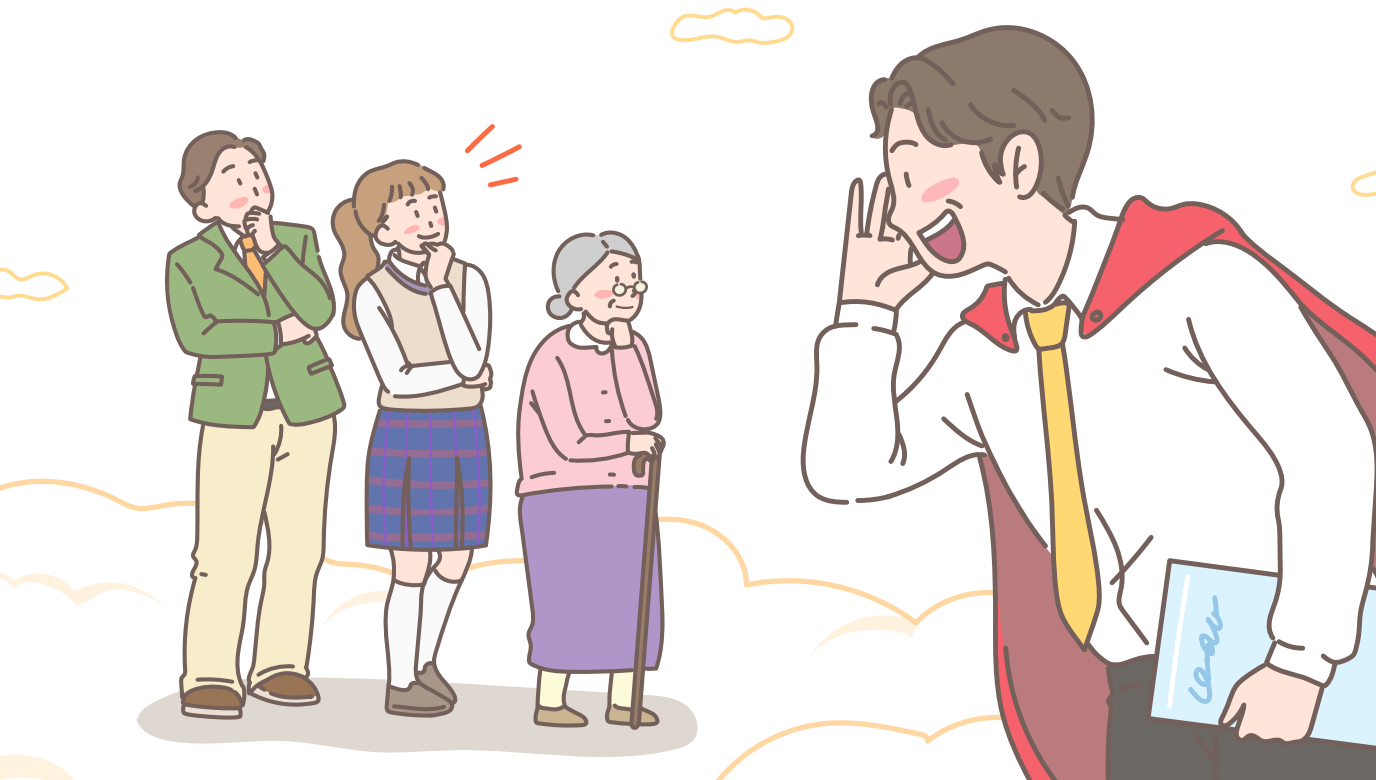

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행정의 역할은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권익 침해 가능성 또한 함께 증가해 왔다. 행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충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동안 민원 제도와 행정심판·소송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가 운영되어 왔으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법률 판단을 넘어, 행정의 합목적성·타당성·형평성까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독립적인 점검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민간 중심의 고충처리기구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포천시는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사·심의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는 기능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민원 처리 창구의 확대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회복·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서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0조
-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원장	양호식	2022.10.20. ~ 2026.10.19.	전)춘천지방법원 태백·평창등기소 소장 현)법무사양호식사무소 대표
부위원장	김도협	2022.10.20. ~ 2026.10.19.	전)국세청 국세 심의위원 현)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위원	고병철	2022.10.20. ~ 2026.10.19.	현)포천시 고문변호사 현)변호사고병철법률사무소 대표

02 고충민원의 개념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정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처리절차(60일 이내)

1 고충민원 접수
- 방문 · 팩스
- 우편 · 인터넷

→

2 처리 방법 결정
- 조사 실시 여부 결정

3 조사 실시
- 민원 관련 자료 검토
- 소속기관 등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 현장 조사 등 실시

→

4 심의 및 의결
- 조사 결과 심의
- 의결서 작성

5 결정 내용 통지
- 처리부서 등과 민원인에게 결정 내용 통지

→

6 조치 결과 이행실태 관리
- 처리부서 등 이행 실태 확인·점검

3. 처리결과 유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합의**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도 개선의 권고	**기각**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안내 종결**
직무 및 권한 밖의 고충민원 및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경우	민원 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4.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경과

- 2025. 1. 16.: 2025년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25. 2. 25.: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운영계획 보고)
- 2025. 5. 9.: 제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제1호 안건)
- 2025. 5. 16.: 제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제2호 안건)
- 2025. 8. 21.: 제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제4호 안건)
- 2025. 12. 23.: 제5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제7호 안건)

Chapter

02 결과

0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결과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결과

0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결과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3명)과 사무국 담당자(3명)를 포함해 총 6명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심의회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조사 활동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

년도	합계	위원회 직접조사								미조사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합의종결	심의해소	기각	안내종결	취하	이첩	각하
'23년	7	7	-	-	1	1	-	3	1	1	-	-
'24년	8	6	-	4	-	-	-	2	-	-	2	-
'25년	9	4	-	2	-	1	-	-	-	1	3	2
계	24	17	-	6	1	2	-	5	1	2	5	2

•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년도	합계			의견표명		시정권고		합의권고 및 제도개선	
	계	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23년	2	1	1	-	-	-	-	1	1
'24년	4	4	-	4	-	-	-	-	-
'25년	3	3	-	2	-	-	-	1	-
계	9	8	1	6	-	-	-	2	1

• 2025년 처리현황 총괄표

연번	사건명	의결구분
제1호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관련한 감사 요청 건	심의 종결(각하) ※ 조사개시 및 심의 거침
제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 관련 책임 회피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 종결(의견표명)
제3호	심곡3리 맹지에 농로개설을 위한 고충민원	심의 종결(각하)
제4호	**읍 **리 **-**도로 개발로 인한 폭우 피해 고발 및 조치	심의 종결(조정·합의권고)
제5호	셀프세차장 차광막을 여름인 7월부터 10월까지 설치허용 요청	민원 취하
제6호	시민의 공유재산 사용여부결정권 침해에 관한 고충 민원	이송(도로과)
제7호	주택 앞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고충민원	심의 종결(의견표명)
제8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요청	이송(건강증진과)
제9호	송우리 길거리 담배 흡연 및 꽁초 쓰레기	이송(건강증진과)

3.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결과

1. (제2025-1호)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관련한 감사 요청 건

피신청인: 포천시장(허가담당관)

민원내용

- 개발행위허가 부지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하였는데도, 관련 허가가 즉시 취소되지 않고 있어, 그 허가가 즉시 취소 되도록 조치 요구한다.

피신청인 등 주장

- 신청인은 포천시 ○○면 ○○리 ○○○번지(이하 '민원토지'라 한다)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법인이며,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최초사업자 ㈜@@에 제공하였다.
- ㈜@@은 처음 개발행위 허가받은 필지와 민원토지를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의 명의를 ######㈜로 변경하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 이에 신청인은 민원토지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하며, 수허가자인 ######㈜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개발행위 변경(기간연장)허가 건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기존 수허가자 법인 파산 등의 이유가 수허가자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행위변경(기간연장)허가 건은 해당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보완 요청한 상태이다.

- 현재 신청된 개발행위변경(기간연장) 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제2항에 따라 보완연기신청을 수리한 상태이다.

- 추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미제출 등 개발행위변경(기간연장) 허가조건 미충족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의2 및 5의3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이 민원 개발행위 허가는 2022. 1. 25. ㈜@@를 최초 수허가자로 및 공사 시행자로 하여 허가되었으며, 2022. 5. 4. ######㈜를 이 허가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민원토지를 포함한 권리·의무가 이전되어 이 민원 개발행위의 건축주는 ######㈜, 건축공사의 시행자는 ㈜@@로 되었다.

- 이후 공사 시행자의 파산을 예견한 이 민원토지 소유자 측은 사업추진 부진 등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토지사용 동의 철회 의사를 표명하여 2024. 10. 8. 허가청에 이 건 개발행위 취소를 최초로 요구하였다.

-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의 만료일은 2024. 12. 31.이며, 건축주는 2024. 12. 16. 허가청으로 개발행위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민원토지 관계인 측에서는 수 차례 즉각적인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 기간연장 허가신청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종 보완기한은 2025. 5. 23.이고, 서류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이 민원의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 확인된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2024. 2. 6.>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판단 및 결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 민원 허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서류의 보완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정된 바, 담당부서의 행정행위에 위법·부당함을 확인할 수 없다.

- 한편, 이 민원 신청인이 민원토지(○○면 ○○리 ○○○번지)에 대하여 토지 처분이나 사용 동의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민원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민원 신청 시 제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민원신청 등에 대한 위임여부를 확인하여 이 민원 신청인에 대한 당사자 적격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결구분: 심의 후 각하

조치결과: 해당없음

2. (제2025-2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피해 관련 책임 회피에 대한 이의 제기

■ 피신청인: 포천시장(산림공원과)

■ 민원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중 발생한 석축 등의 훼손으로 책임자를 가리고, 그 시설의 원상회복(보상 등)과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가 필요함

■ 피신청인 등 주장

- 산림공원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방제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 방제조치 중, 방제조치 후 재해우려로 재해예방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사면안정(사면다짐, 줄씨 파종)을 실시하고 우천 시 지속 점검하였다.
- 축대의 소실 등에 따른 책임인정 및 피해보상 요청에 관한 사항은 사인 간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각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포천시 ○○리 산○○번지 일원 임야 소유주에게 2023. 1.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하였고, 2024. 2월부터 4월까지 방제작업이 실시되어 같은 해 5월 재해예방 조림을 실시하였다.

- 이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사면안정 조치를 지속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피해사항이 없고 피신청인은 사면이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은 방제명령에 의해 실시 된 감염목의 모두베기 작업 간 발생한 사유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행정청의 책임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 · 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 · 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 · 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 ·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 ·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 · 도 또는 국유림 · 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 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23. 8. 8.>

[제목개정 2015. 6. 22.]

판단

- 감염목의 방제작업 의무자와 실시자는 임야 소유주와 방제업체이므로 방제작업 시 사유시설의 훼손에 따른 책임은 그 의무자와 실시자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만, 피신청인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도록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된 방제작업 간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아가, 신청인은 사유시설의 훼손에 대한 복구와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산림환경의 보전과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기 실시한 사면안정 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인정된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주 원인이 되는 행위(석축의 훼손)에 대하여 시민고충 해소 차원에서 민원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자(방제조치 의무자, 실시자)에게 재해발생 위험 등을 알려 민원해소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산지 법면 녹화작업에 대한 묘목, 풀뿌리(줄씨 등)의 생착정도를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본 건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청인과 방제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알릴 필요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의견표명'한다.

- 조치할 사항

  피신청인(산림공원과장)은

  가. 감염목의 방제작업 의무자인 임야소유주와 실시자인 방제업체에게, 석축을 훼손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볼 것을 공문으로 통지하되, 협의 불성립시 향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훼손된 석축의 미복구 등을 이유로 그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인에게 감염목의 방제작업 의무자와 실시자는 임야 소유주와 방제업체이므로 방제작업 시 사유시설의 훼손에 따른 책임은 그 의무자와 실시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조치하고, 다만 포천시(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위 가.항의 내용을 임야소유주와 방제업체에게 통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후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녹화작업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이 적절히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의결구분: 의견표명

조치결과: 수용

- 산지복구 의무자 및 방제업체에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안내 완료
- 산사태 등 예방을 위한 현장 자체 점검계획 수립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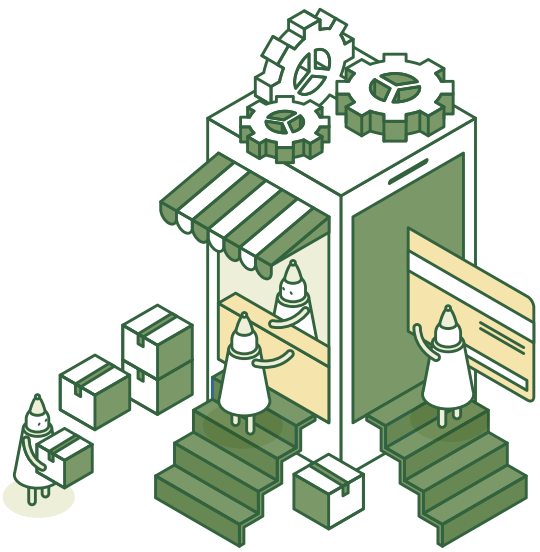

3. (제2025-4호)○○읍 ○○리 ○○도로 개발로 인한 폭우 피해 고발 및 조치

피신청인: 포천시장(허가담당관)

민원내용

- 민원토지 인근 국유지 및 묘지개발로 인해 현황 배수로가 변경되어 피해를 입고있으니 구조물로 된 수로관 설치 요구함

피신청인 등 주장

- 건설하천과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이후 허가받지 않은 행위로 인해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 그 외 국유재산(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기존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설치 된 구조물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이며,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기존에 설치 된 우수관(D300)과 간섭되어 공사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허가담당관은 산지복구설계 승인사항대로 법면 녹화가 이루어져 묘지개발에 따른 산지복구 준공에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 2024. 4.~11.까지 국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인근토지 피해방지를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 통보되었다.
- 예상 밖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추가 피해를 우려한 신청인과 ○○○은 허가없이 토사배수로를 조성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
- 건설하천과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통지하여 국유지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 토사배수로가 평탄화 되자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건설하천과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조사하여 공공공사(배수로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다만, 이 공공공사의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의제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 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 · 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30.>

•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 「산지관리법」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판단

- 이 민원 국유지 일원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東)측으로 가파른 산지가 위치해 있으며, 서(西)측으로는 국유지 도로와 사유지가 위치해 있다.

- 민원의 발단이 된 묘지개발 간 국유지 일시사용 범위는 묘지개발에 필요한 일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집중호우 이후 현장상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인근 주택에서 방류되는 우수관로가 토사로 인해 막혀있으며, 신청인의 토지에는 기존 배수로가 변경되어 법면 유실, 잡석 퇴적 등이 일부 확인된다.

- 이 민원 국유지 일원의 지형이 서(西)측으로 우수가 집중되는 형상인 점, 묘지개발에 사용된 국유지 및 산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점, 국유지 및 사유지의 훼손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청에서 수해 예방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민원토지 일원 피해 및 훼손이 모두 묘지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다만, 신청인의 요청대로라면 공공공사(배수로설치)의 계획 상 기존 배수로(D300)에 신설배수로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배수로의 단면은 일대 우수를 소화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계인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기존 사유시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설배수로 설치 시 편입되는 사유시설 및 사유토지를 최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조정·합의' 권고한다.

• 조치할 사항

피신청인(건설하천과장)은

가. 기존 허가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여 공공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조정)

나. 공공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 시 편입되는 사유시설 및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공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의)

의결구분: 조정·합의 권고

조치결과: 수용

• 2025. 9. 11.(목) 합의서 작성 완료

- 기존 허가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유지과 신청인의 토지를 가로질러 신청인의 토지에 기 설치되어 있는 관로에 연결하는 배수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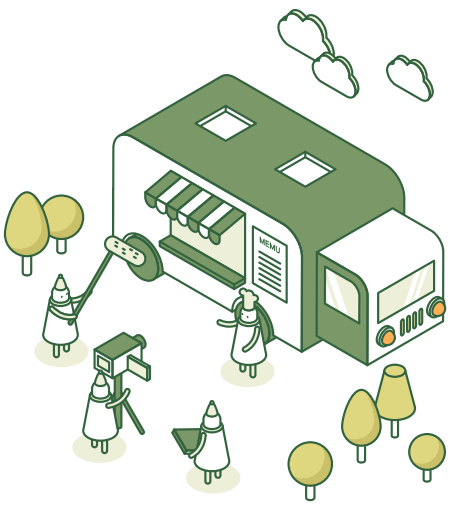

4. (제2025-7호)주택 앞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고충민원

■ **피신청인:** 포천시장(허가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 **민원내용**

• 민원토지(○○면 ○○리 ○○등) 일원 예정된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민원시설'이라 한다) 개발에 대하여, 이 시설 주변환경 및 법령을 검토하여 관련 허가가 적법한지 판단 후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

■ **피신청인 등 주장**

가. 이 민원시설의 입지규제

허가담당관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 검토 결과 이 민원시설이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면서,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공공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하고,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였으므로 입지규제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 개발행위허가 사전고지 의무

허가담당관은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민원시설의 발전(계획) 용량이 500kw미만이고, 개발면적이 5,000㎡미만이므로 주민 등에 사전고지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이 민원시설 개발자가 주민 등에 사전고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발전용량과 개발면적을 각각 499.68kw, 4,995㎡로 계획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적용의 회피의 의도로 해석하긴 어려우며, 사전고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 민원시설의 건축

허가담당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생산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이 민원시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이 민원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방지계획

허가담당관은 이 민원시설 개발에 따른 피해방지계획 중 토사유출, 우수배제 등과 관련하여 U형측구수로관(300*300)이 이 민원 개발부지 경계로 반영되어 있는 점, 주변 지형과 비교하여 개발부지가 더 낮게 위치해 있는 점, 허가조건으로써 피해방지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조치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민원시설의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발전(전기)사업 자격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민원은 타 기관의 기술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발전용량에 따른 에너지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와는 별도의 검토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4.4.3.>

1.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3.>
2.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10호 이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26.>

3.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산지의 형상 변경(영 제51조제1항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배수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7.3.>

4.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 경계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2.26.>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7.3., 2020.2.26., 2021.9.29., 2023.4.19., 2023.11.24.,2025.3.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주차장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면적은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제5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본조신설 2017.12.27.]

[제목개정 2023.4.19.]

•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5., 2020. 3. 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8. 6. 1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이 건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이 민원시설이 입지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발전용량·개발면적에 따른 주민에의 사전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관련법 상 이 민원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인 점, 토지 개발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의 이행에 대한 허가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발행위허가에 위법·부당함을 확인할 수 없다.

나.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이 건 발전사업허가의 성격은 관계 행정심판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의 발간자료 등을 살피건대 개발행위허가와 서로 분리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민원토지 일원 기반시설 등 현황

이 민원 신청인은 민원토지 일원 토지이용 현황(석재공장 등) 및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로 인해 생활불편을 오랫동안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민원신청에 따른 고충처리신청 조사결과, 관련 허가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거주·생활(기반시설 등)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가. 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의견표명' 한다.

나. 조치할 사항　피신청인(허가담당관)은

1) 이 민원시설 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및 소음발생 예방, 미관 및 경관 유지를 위해 허가조건과 피해방지계획이 철저히 실행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 개발행위의 착공부터 준공 및 준공 이후의 피해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표명)

2) 이 건 허가 등 적용 법령의 검토사항과는 별개로, 이 신청인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관계부서(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구분: 의견표명

조치결과: 수용

-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에게 착공신고서와 비산먼지 신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우기철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공사 준공 전까지 우기(6월, 7월, 8월)에는 매월 1회 현장점검 및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점검하겠다.
- 준공 이후 시설물 지도·감독 권한은 없으므로, 준공 전 주변피해 및 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
- 공사 중 생활불편 민원접수 시 적극 대응하겠다.

Chapter

03 부록

04 부록

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04 부록

1.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9.16 조례 제1267호

(일부개정) 2022.04.13 조례 제14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38조까지에 따라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2022.4.13.>
3. 삭제 <2022.4.13.>

4. “소속기관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22.4.13.>

제2장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개정 2022.4.13.>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4.13.>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목개정 2022.4.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2.4.13.>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4.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4.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3.>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3.>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4.13.>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

[제목개정 2022.4.13.]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목개정 2022.4.13.]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13.>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4.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3.>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3.>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개정 2022.4.13.>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4.13.]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3.>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22.4.13.>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4.13.>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조사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2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25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7조(재심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28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4장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사무기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13.>

제3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4.13.>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09.21 규칙 제5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위원회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 · 조사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합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부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이송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결정의 통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8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 실태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기구 구성)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위원회가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3조(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 상황을 시장과 포천시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고와 함께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공인의 사용) ① 위원회가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포천시 공인조례」와 「포천시 공인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5조(정보의 보호) 위원회 등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22.9.21.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